

SPECIAL - 1

논단  
& 특집



#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방안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과장 심성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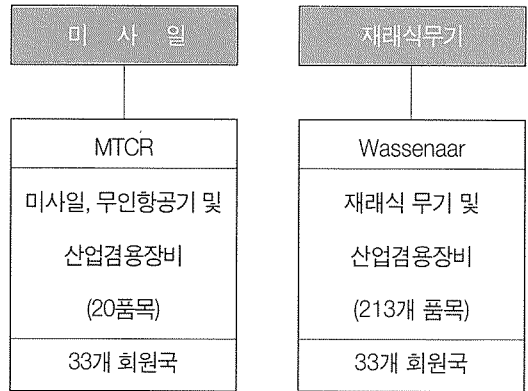
□ 수출통제 강화 배경

미국 등 국제사회는 국제안보와 평화를 위해 이라크전쟁을 불사할 만큼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민감하며,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가 이러한 국제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업체의 피해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수출통제를 강화해야 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그로 인한 수출업계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해외영업활동의 위축은 피하는 방향으로 이행해나가야 하는 것이 정부의 당면과제다. 이러한 공감대 하에서 업체가 스스로 자율적인 수출관리시스템을 구축해나가도록 정부·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수출통제강화방안을 마련하였기에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수출통제제도는 시행되고있지만 ?

수출통제제제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불순한 의도를 가진 단체나 개인이 핵, 생·화학,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대량파괴무기는 물론 이를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생산설비, 검사장비, IT 전자부품, 소재, 화학제품 등 광범위한 관련물자를 입수할 수 없도록 저지하는 국제협력체제다. 분야별로 4개 체제가 현재 활동 중이다.



〈 수출통제를 위한 국제체제 〉

우리나라는 89년 이후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를 도입하고 4개 국제체제에 가입하게 된 이유는 국제안보와 평화유지에 적극 참여하는 것 외에 선진국으로부터 사실상 첨단기술을 도입하는데 비회원국에 대해 존재하는 기술장벽을 제거하고 해외시장에 적극 참여하고있는 우리기업을 보호하는 경제적 목적도 크다.

국제체제에 위반한 기업이 적발될 경우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3년간 수출입을 제한 받고, 미국으로부터는 20년까지 그 회사에서 취급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교역을 제한받게 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최근 공개한 처벌 사례에 95~2000년 사이에 20여개 외국기업을 처벌한 사례가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서 무역금지는 그 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수출통제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더욱이 국제사회에서 우려국가로 분류하고 있는 이란, 리비아, 시리아, 북한, 파키스탄, 인도, 중국 등 21개국은 우리가 중시하는 제3시장이고,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우리기업이 수출증대에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동 제도를 위반하여 제재를 당하는 일은 예방하여야 한다.

□ 수출통제 강화 필요성

통제대상 물건을 생산할 기술이 없으면 통제할 필요도 없

다. 우리경제의 80년대 초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90년대 후반에 우리업체들의 기술수준은 급격하게 향상되어 대부분의 첨단제품을 생산·공급할 능력도 갖추게 되었다. 우리 기업인의 평가에 의하면 수출통제대상의 어떤 제품이라 할지라도 도면과 사양을 제시하여 주문하면 대부분의 우리 중소기업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문제의 제품을 수출해도 적발될 가능성이 없으면 수출기업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우려국에 대하여 주권국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사찰을 실시하고, 무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물품을 색출하는 무력행사나 작전이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기업은 자기가 수출하는 물품이 국제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통제대상 물자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수출에 몰두하고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략물자를 입수하기 어려운 단체나 국가들이 전략물자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공급선으로 우리기업을 이용하고 있다.

리비아가 작년 12월 국제사회의 사찰을 수용함으로써 1차 조사단이 들어 갔을 때 사찰대상 시설에서 우리나라 밸런싱머신의 불법수출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형사고발 상태에 있으며, 이 장비를 제작하여 수출업체에 공급한 중소기업은 30년간 노력한 결과로 밸런싱머신의 세계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결과 문서에 자사이름이 회람되었기에 해외시장에서 수출을 제한받는 근거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리비아에 대한 추가 사찰이나 이란에 대한 사찰이 예견되고있다. 그 동안 이들 국가와 거래한 기업 가운데 우수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있는 기업들은 과거 수출했던 제품이 문제될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더욱이 수출통제에 대한 최근의 흐름은 단순한 제도 시행보다는 실질적인 이행에 대한 국제적 감시가 강화되고있는 추세다. 미국은 9.11테러이후,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국토안보부를 신설하고, X-ray투시기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전략물자의 불법 및 밀거래 색출·추적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외교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대량파괴무기 확산 저지정책에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연간 10건 이상에 대해 우리기업의 연루사실이나 혐의점에 대해 통보하거나 확인을 요청 받고 있다. 이미 작년 8월부터 부산항을 포함하여 세계 주요 항구에 미국 세관원을 상주시켜, 미국의 안보, 이해관계가 있는 컨테이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강제사찰의 또 하나의 수단으로, 확산안보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을 추진하고 있다.

확산안보구상이란, 의심스런 화물을 실은 항공기는 강제착륙시키고, 선박은 정선·승선조사하여 문제화물로 확인되면 압수하겠다는 구상이다.

1년만에 이미 5차례의 관련 국제회의가 열려 15개국이 참여하고, 60여개국 이 지지함으로써 안전운항을 보장하는 국제법까지 개정하려는 움직임으로 진전되고있다.

우리 수출화물이 국제사회로부터 의심화물로 추적의 대상으로 우리정부에 협조를 요청 받는 상황이나 여기저기서 위반사실이 적발된다면, 국제체체에 모두 가입하고 국제안보와 평화유지 대열에 서있는 우리의 국가이미지 실추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대표적 기업이나 대다수 기업들이 연루된다면 우리 경제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 □ 수출통제의 당면 목표와 기본방향

국제사회로부터 우리기업들이 수출제한을 당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다자간 국제체제가 수시로 작성·배포하는 거래부적격자목록(Denial List)에 우리업체가 등재되면 3년간 회원국으로부터 전략물자를 수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정부·기업이 협력하여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면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물자를 다루는 기업들이 수출통제제도를 이해하고 준수해야한다. 그러나, 사실 우리기업들이 전략물자를 방산물자나 무기류로 오해하는 기업이 많고, 자사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모르고있는 게 현

실이다. 우리가 국제체제로부터 통보받은 통제대상 리스트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용어로 표현되어있고 분량도 400 페이지에 달한다.

기업들이 이 방대한 기술문헌 내용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사제품이 전략물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통제대상리스트의 통제번호와 그 번호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HS(무역상품분류)를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느끼고 작년에 일본 경제산업성의 도움과 13개 업종단체의 협력으로 완료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자사제품의 HS코드에 의하여 관련된 통제번호를 확인하여 그 통제번호의 기술명세 내용만을 검토함으로써 전략물자 여부 판단에 필요한 기술문헌 검토범위를 1% 미만으로 축소하게 되었다.

또한 이 HS연계 작업결과를 이용하여 전략물자일 가능성이 있는 규모가 파악되었으며, HS10단위는 1993개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작년도 수출규모는 720억불, 140만건이었다. 이 HS코드화 작업결과를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에 게재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들이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시발점에 불과하다. 우리기업의 제재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통제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다양한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면서 이행수준을 높이는 게 정부의 수출통제 기본방향이다.

#### □ 기업의 자율통제와 정부의 시스템 구축

기업이 제도를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실에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된 『전략물자수출통제강화방안』은 이러한 안목으로 기업·정부가 협력하면서 시행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현행의 전략물자수출입공고는 국제안보질서의 목적에 따라 수출통제체제로 구성되었으나, 기업은 필요한 업무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므로 발생 업무순서

에 따라 사전판정, 수출허가, 수입증명서, 자율준수체제로 편제, 수요자 편의위주로 개편한다.

전략물자일 가능성이 있는 HS에 자사제품이 속한다 할지라도 전문인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한 두 페이지의 기술명세도 이해하기 어려워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 그래서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우리기업 실정에 맞는 “전략물자인지를 판단하는 도구”를 품목별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이 스스로 전략물자여부를 판단하는데 전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제품출시 단계에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관리한다. 그러나, 우리기업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하여 금년부터 품목별 판단도구인 파라메타시트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기업에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아무리 편리하고 쉬운 도구가 있어도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이러한 기업은 여전히 동 제도를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조차 상무성에 150명 내외의 전문가들이 판정해주는 일을 하고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략물자해당 여부를 알지 못하고있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도 당분간 전략물자해당 가능성이 있는 HS에 속한 수출품에 대하여 판정해주는 제도도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처럼 정부 내에 이러한 전문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전문가를 발굴하고 외부기관 용역에 의한 판정제도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착안점을 모아서 자율준수제도로 보급할 계획이다.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원 처리기간은 짧아야 하고 기업의 직원이 왕래해야하는 행정절차는 생략되어야 한다. 수출통제가 강화되면 동 제도 이행율은 현행 6~7% 수준으로부터 높아질 것이고, 더불어 행정수요도 엄청나게 증가할 게 뻔하다. 그리하여 미국, 일본, EU 국가들은 청단위, 국단위 규모의 정부조직이 수출통제를 담당한다.

그러나 우리의 정부조직 확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전산시스템에 의한 행정절차 처리와 신속화가 해결책이다.

다양한 수출통제 데이터관리, 계속 수정되는 통제대상리스트, 실시간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관리할 공공기관을 설립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미국에서는 허가받는 데 소요되는 처리기간은 평균 44일, 일본은 14일이지만, 우리의 현재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를 유지하여야 한다. 우리기업이 수출 주문 후 선적하는 기간이 유난히 짧은 현실은, 인허가기간이 길어지면 수출기업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산시스템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담기관설립이 요청되고있다.

#### □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설비반출 심사체계

또한 개성공단 추진에도 전략물자 수출통제시스템을 요구한다. 우리업체의 개성공단 입주가 가시화됨에 따라 수출통제는 시급하고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개성은 북한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입주기업의 시설과 원자재가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경우, 민족간 내부거래로 보는 국내적 시각으로는 문제될 게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보면 수출통제체제에 배치된다. 북한은 핵문제등 우려국가로 통제대상 물자는 물론 화학, 소재, 품질이 통제대상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물자까지 우려용도로 의심되면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제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시작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개성공단으로 반출될 엄청난 물량의 물품들 중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물품을 선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추진체제를 신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곧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개성공단을 추진할 때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며 원만히 진행할 것으로 보며, 설비 및 원자재를 남한기업에 의해서만 이용되고있는 사실이 투명하게 입증될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입주기업에 불가피한 통제대상물자까지 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 □ 결론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규범으로 시행되고있는 전략물자수출통제에 대한 우리기업의 무관심 상태가 더 이상 용인되기 어렵다. 동 제도를 몰라서 안지킬 경우, 그 기업은 치명적인 위험 빠질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4. 28일 UN안보리상임이사회는 만장일치로 WMD확산행위 및 지원을 금지하고 각국은 통제체제를 강화할 것을 결의하였다. 따라서 모든 UN회원국은 구체적인 법률입법과 이행사항을 올해 10.28일까지 UN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

그 통제내용은 단순한 공급(수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개발, 제조, 획득, 보유, 운송, 유통, 사용에 이르는 상품 공급체인의 모든 행위와 그 행위자에 도움이 되는 지원, 그 행위자에게 자금이 공급되는 행위(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하는 통제를 강화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수출진흥을 추구하는 우리경제와 기업이 선택할 정책방향은 명확하다. 통제대상물자라 해도 기업이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출하면 된다. 기업이 허가과정에서 속이지 않았다면, 기업은 연루사실이 적발되어도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통제 이행에 따른 우리경제나 개별기업의 수출차질도 크지 않다. 허가신청에서 거부되는 수출규모는 몇천만불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결국, 수출통제체제를 최소비용으로 준수하는 방법이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직하게 이행하는 방식이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현방안을 지원하고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행기업이 제재 받게 될 연루사태가 발생했을 때 동 제도에 따라 절차를 밟은 허가 또는 기록은 면책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체제는 정부차원에서 시급하다.